
국제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미국 출장보고서

2017. 12

변수정

〈출장개요〉

- 출장자: 변수정 부연구위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 출장 기간: 2017년 12월 4일 ~ 12월 16일
- 출장 목적: 국제화 역량 강화
- 출장지: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UIUC),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 본 출장은 연구원 국제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 된 바 미국 방문 중 전문가 면담에서 논의 된 내용들을 위주로 출장보고서를 정리하고자 함.

1. 미국의 다양한 가족

□ 동거 가족 현황 및 이슈

○ 미국사회에서도 1970년대 이후 젊은 층에서 결혼 연기나 혼인을 감소, 반면 동거의 증가 현상을 찾아볼 수 있음.

- 동거가 결혼보다 헤어지기 쉽고 헌신하는 수준이 낮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음.
- 동거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동거가 싱글 일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는 결혼 전에 살아보는 형태로 동거가 이루어지면, 유럽 여러 사회에서처럼 동거가 결혼 대신 택할 수 있는 삶의 한 방식이 되는 특징으로 본다면, 미국은 완전히 동거가 결혼 대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결혼 전에 동거 생활을 거치는 경우가 좀 더 많아 보임.
- 즉, 동거를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를 택하는 경우와 결혼 전에 함께 생활하는 동거로 나누어 본다면, 결혼의 대안으로 택하는 동거유형은 유럽형에 가깝다 볼 수 있고, 미국의 경우 결혼의 대안으로 하는 동거도 물론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의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동거의 경우를 더 많이 논하고 있는 분위기 임.
- 2011년 기준 OECD Family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20세 이상 성인 중 혼인을 했거나 등록된 파트너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2.40%이고,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는 7.10%로 알려져 있음.
- 이는 OECD 평균이 혼인했거나 등록된 파트너 관계에 있는 경우가 50.27%,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가 9.99% 인 것과 비교해 보면 순수한 동거 관계는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임.

- 동거를 경험하는 경우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결혼 전에 동거를 한 경우는 이후 결혼 관계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음.
 - 그 이유는 동거 단계에서 여러 약속들을 하게 되고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그 약속들로 인해 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 전에 동거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원래 전통적인 태도나 시각을 가지고 있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겨도 이혼보다는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우선하기도 해서 동거 관계를 거친 커플이 덜 안정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동거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찾아보자면 ‘Domestic Partnership Law’ 라고 가정동반자관계에 대한 인정이 있어 왔지만 이는 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 위했던 것임.
-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동거 하면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임.
-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이 결혼으로 인해 얻는 이점이 크지 않게 되고 그만큼 여성들이 느끼는 결혼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임.
 - 이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택하는 여성이 늘고 출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동거의 불안정성이 더욱 크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거사이에서의 출산은 그만큼 불안한 자녀양육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동거 가족 증가가 자녀 양육 측면에서는 나을 수 있다는 입장도 존재함.

□ 미혼부모 가족 지원 및 관련 이슈

- 미국 복지의 기초가 기본적으로 잔여적 복지체제이기 때문에 미혼부모에 대한 복지나 지원서비스 측면에서도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미혼부모에 대한 보호나 권리보장, 혹은 자녀양육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은 유럽국가에 비해 약한 편임.
- 하지만 최근에는 10대 미혼부모 문제로 인해 개입을 시도하고 있음.
 - 10대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출산 후에도 학교에 아이를 동반하거나 아동을 보호해주는 시설을 제공하여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교육 과정을 마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그리고 성인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스킬 등에서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 부모됨을 위한 교육이나 양육 준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가족 안정성을 위해 저소득층 미혼모에 대한 주거지원 등을 찾아볼 수 있음.
 - 이에 더해 건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이와 함께 10대 임신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및 피임에 대한 교육 등 10대 임신을 예방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도 미혼부모에 대한 편견이 아주 없지는 않아서 낙인효과를 줄이고 사회적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한 인식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 한부모 지원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중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저소득층 대상 지원 및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족복지 및 사회복지 내용에서 논의됨.

□ 전체적으로 미국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복지나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보았을 때 유럽의 상황보다는 더욱 비슷한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우리 사회에서 동거 가족 등은 최근 점차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가족으로 인정되기 전 단계라고 볼 때, 이 가족 형태가 향후 유럽형으로 이어질지 혹은 미국형으로 이어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유럽보다는 미국형과 닮아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동거와 같은 가족 형성에서는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 경제·사회적 배경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동거 가족의 안정성 등에 대한 연구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할 것임.

2. 미국의 사회·가족 복지

□ 미국의 복지는 기본적으로 잔여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서비스를 유지

- 예를 들어 소득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아동세금환급공제(CTC, Child Tax Credit) 등이 있음.

○ 특히 일반적인 기조가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단기간만 복지 대상에 머무르도록 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음.

-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는 노동을 조건으로 제공되며 일정 기간 안에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급여 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면 수혜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으로 가족에게 지원이 이루어짐.

□ 자유주의적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때문에 복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을 확장하지 않고 잔여주의적, 선별주의적 입장으로 가족에 대한 개입을 유지하는 모습임.

○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에서도 시장의 논리에 따르는 구조로 공보육서비스가 크게 발달해 있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상황임.

○ 양성평등 문화가 발달되고 그에 따른 양육 및 휴가 시스템이 발달한 유럽과 달리 미국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족문화를 기본가치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유럽과 달리 미국은 근본적으로 여성이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제1양육자가 되고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공보육이 덜 발달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보육서비스를 시장에서 해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양육서비스에 있어서 이분화 된 구조로 양육이 계층화 되는 것이 문제로 남음.

○ 우리나라의 영유아 건강관리가 저출산 대응 정책 중 하나로 간주된다면, 이에 대응해서 볼 수 있는 미국 정책은 영유아나 아동,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충분한 영양상태 유지와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

원 중 하나인 영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WIC, Womem, Infants and Children Program)을 들 수 있음.

- 이는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영양상태 유지 및 성장을 위해 철분이나 비타민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 또한 보편복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만 4세까지 영유아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출산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출산율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미국도 이민자 집단 혹은 히스페닉 계 등(이민자 집단이 주로 히스페닉 계이기도 함) 사이에서는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인종별로 보면 백인의 고등교육을 받은 집단만을 보면 출산이 줄어드는 추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미국도 향후에는 인종에 따른 출산율 격차가 심해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음.

□ 선별주의를 골자로 복지체계나 가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한부모나 미혼부모 가족 등에 대해 개별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다만, TANF 등에서 한부모 가족이면서 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근로시간을 줄여주거나, 프로그램 수혜 중에 근로를 반드시 시작해야하는 등의 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예외를 약간씩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저소득 가정에 한해 매월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임.

- 향후 추구해야 할 것은 다양한 가족이라는 구분조차 없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현재 환경에

서는 한부모 가족과 같이 성인 양육자가 1명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일
단 소득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